

입학사정관 운영위원회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3.1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입학사정관 운영위원회규정

- 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운영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구성)**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전입사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7.3.1>
- 제3조 (임기)**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
 2. 입학사정관 전형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 3. 서류평가 관련 사항
 4.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이의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연구 및 제언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제5조 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 (분과위원회)** ① 제4조 각호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전항의 분과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3.1>
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7조 (회의주관)** ① 위원회는 입학처에서 주관한다.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입학관리팀장으로 보한다.
- 제8조 (준용)**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